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10. 27(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10월 10일
- 회부일자 : 2011년 10월 13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10월 24일

-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 홍 범 희)

가.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입안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

-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방법,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비용추계 작성의 협조 등을 명시하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 안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한 조항의 적절성 여부와,

- 안 제11조제4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다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제18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도지사는 제정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수정안 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10. 24, 김광수 의원

○ 수정이유

- 안 제11조제4항의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와 ‘제3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삭제하고자 함.

○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u></p> <p>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p> <p>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p>	<p>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p> <p>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p>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는 등 입법 참여 기회와 입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민은 물론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관련 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 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필요 시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반영) 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 의견 처리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세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

제16조(입법안 심사) ① 발의 의안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 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7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8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각각의 공포 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각각의 조례·규칙 별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9조(공포방법) 공포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20조(공포일) 공포일은 도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21조(효력발생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시대적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조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3조(개정의견 제안)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개정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 ○○○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
-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 △ △						
△						
△ △ △						
△						
△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 △ 특						
별회계						
△ △ 특						
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침부제외 사유서

○ 침부제외 관련규정

○ 사 유

○ 작성자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

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 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 나. 추계의 전제
 - 다. 추계의 결과
 -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 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